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91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서영교・위성곤・윤준병

박희승 • 이해식 • 한정애

박홍배 · 강유정 · 박용갑

장경태 · 임오경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 일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	제2조(유효기간)		
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u>2024</u>	<u>2029</u>		
<u>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u>년</u>		
다.			